



## 회계 · 계약 운영 관련

### 1. 총액입찰에서 설계내역단가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공동이행방식(제한경쟁입찰-30억원미만공사)으로 2004년 11월 22일 계약하여 현재공사 수행중에 있으며 당초 설계시 하수관내 돌출관(연결관)절단은, 하수관경의 크기가 여러종류(D300, D400, D450, D500, D600, D700, D800, D900, D1000, D1200)로 존재하나 설계내역단가상의 단일단가(인력절단품)로 적용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하수관내 돌출관(연결관)절단은 표준품셈에 의거 하수관경이 D800m/m이상과 D800m/m이하로 구분하며 D800m/m이상의 경우는 작업인부가 하수관내에 진입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절단품을 적용하고, D800m/m이하의 하수관내에 작업인부가 진입하여 작업이 곤란하여 절단기계를 진입시켜 작업하는 기계절단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단가를 적용함 (2005년 표준품셈- P928, P943, 0958 참조)

질의) 설계내역서상 하수관경이 D800m/m이상으로 설계되어 하수관내 돌출관(연결관) 절단이 단일품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공사를 위하여 현장조사한바 하수관경의 크기가 D800m/m이하인 경우에 표준품셈에 의거 기계절단품으로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특허·의장등록된 제품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조달 요청시 수요기관에서 디자인, 시공 및 주재료에서 단순 비교품이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 주재료의 비율이 전체 공정의 80% 이상.

### [회신]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동 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 내용이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에 작업방법이 명시된 경우로서 동 작업방법이 현장상태가 달라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서 및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2. 소액용역의 입찰제도 개선요망

### [질 의]

- 올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업으로 창업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업체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공공기관에서부터 가



로막고 있습니다. 용역에 참여하여 수행할 능력과 자신이 있는데 “실적이 있는가”를 잣대로 하여 입찰에 참여조차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득권세력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소액용역은 굳이 실적이 없어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망합니다.

###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에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이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시공)실적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고 경영상태 등에 의한 수행능력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적격심사기준을 개별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나 우리부에서는 추정가격 2억원이하의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실적에 의한 평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법률 질의

### [질 의]

-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놀이동산 운영업체의 유희기종 지연설치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관련 질의
- 놀이동산의 유희시설(8종) 민자유치 실시협약자인 ○○(주)는 실시협약상의 설치기한을 훨씬 지난 현재까지 일부 유희시설의 설치를 지연(4종)하고 있는바, 계약해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약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타당성 있는 방안에 관하여 질의

[회신]

- 귀 질의 경우 민자유치에 따라 협약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의 내용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고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자치단체가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때 산정 부과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부과합니다.

1.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동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 지체상금율
  - 공사 : 1/1,000
  - 물품제조 · 구매 : 1.5/1,000
  - 물품수리 · 가공 · 대여 · 용역 및 기타 : 2.5/1,000
  - 운송 · 보관 및 양곡가공 : 5/1,000

2. 계약금액

-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 금액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년차 계약 금액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사용되고 있는 기성부분은 계약금액 산출시 제외

3. 지체일수

- 준공(납품)기간내에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검사에 합격 : 지체일수 없음
  -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 :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준공(납품)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준공일(납품일)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
- 연대보증시공의 경우 : 부도확정일로부터 연대보증시공 지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
  - ※ 기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4. 소액용역의 입찰제도 질의

##### [질 의]

- 전문건설업은 면허종목당 기술자 2명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석공면허입니다 입찰결과 1순위 업체가 석공, 철콘 2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입찰일 전까지 기술자를 3명만 보유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부합되는지 여부

##### [회 신]

-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 목적물의 목적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도급 허용여부, 지역제한, 면허 등 발주처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발주처에서 입찰공고시 기술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으나.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미달하여 공사를 시공하거나 2개면허 이상을 가진 업체가 적정수의 기술자를 확보하지 않고 돌려가면서 시공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취소,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 완화인정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0억이상 100억미만의 평가기준 중 수행능력평가의 시공실적으로 평가하는 공사이외의 경쟁입찰은 최근 3년간 공종의 실적의 합계액이 추정가격의 2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1~2개사에 불과한 경우, 업종별 실적의 합산인정 또는 실적의 완화인정으로 평가하여,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입찰공고를 낼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보다 완화시켜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자부 예규 제160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와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심사기준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6. 관급자재 계약관련 선금급 지급관련 질의

### [배 경]

- 가. A조합이 B군과 하수처리시설 관급자재에 대하여 단체수계약을 체결하고 A조합은 행정절차에 따라 착공계와 제작도면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기계제작준비를 하면서 원자재를 조기 구매하고자 행정자치예규 제2조 제1항의 선금 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을 청구하였으나 B군으로부터 제작도면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질 의]

- 상기 B군의 선금지급거부가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어디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제작도면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선금 미지급사유에 해당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으로 미지급사유를 통지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 행자부예규 161호 적격심사기준 별지 9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시설공사 전자입찰을 보는데 예규 161 호의 2억미만 평가기준에서 해당 시군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0.2점의 접근성이 빠집니다. 그런데 실적신인도의 +2점으로 커버가 가능한지요. 또, 최근 3년간의 실적이라면 2005년 7월공고의 경우 2002, 2003, 2004년의 실적인가요? 올해실적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관급공사실적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민간공사도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 귀사가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이 1배 이상인 경우 실적신인도 점수 2점을 부여받게 되며 입찰공고일이 7월 이후에는 2002, 2003, 2004년의 3년간 실적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은 민간공사실적도 포함되나 협회에 신고된 실적이어야 하거나 협회에 연간단위로 통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8.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이 해지될 경우 기성금 환수 여부 질의

[질의]

- 소프트웨어 용역 “△△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하던중 2차에 걸친 기성금 3억원을 계약업체에 지급 하였습니다. (2차 기성 당시 전 공정 57.76% 인정)사업을 진행 해 오던 중 사업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계약 보증금에 달하게 되어, 국제법 75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1. 해지 당시 공정산출물이 인수 및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소프트웨어 용역은 공사와 달리 완성품이 아닌 상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바, 기 지급된 기성금을 환수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공정 진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기성금 지급을 인정하고 환수하지 않아야 할지?
  2. 만약, 해지이후 새로운 업체와 재계약하여 재사업을 한다고 할 때, 기성금 지급될 당시의 공정(분석,설계 단계)이후부터 과업의 범위로 주어 재계약을 하여 용역사업을 새로이 진행한다면, 기 지급된 기성금을 인정하고, 기성금을 환수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 용역사업은 완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성금을 환수 받아야 할지?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예정공정표를 참고하여 실제 이행한 부분을 기성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기성부분에 이어서 용역을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자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9. 시공실적 인정여부 질의****[질 의]**

○ 당사는 ○○구청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1호 2005.2.3) (별표 1)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거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2)를 받고자 함에 있어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당사는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를 첨부와 같이 연차별로 계약, 준공하였으며 이에 “(순번 18)공사부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공사이므로 연결된 1건의 실적으로 볼수 없다(이하 갑론)”는 의견과 “회계예규(2200.04-126-2, 03.12.26)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정의)에서와 같이 당초 매립공사의 동일한 사용목적으로 시공된 연결된 부대공사이며, 또한 동일인이 시공한 동일구조물공사로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된 부대공사이므로 이는 별도의 공사가 아닌 연결된 1건의 단일공사로 인정(이하 을론)”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갑론 또는 을론중 어떤 의견이 옳은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61호) <별표1>의 규정에서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을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의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 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계약에 의한 1건의 동일구조물 공사라면 1건의 시공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연차계약공사의 완료 후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보수보강공사는 경우에는 신규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관련 질의

[질 의]

- 실적신인도 접수채정 시 최근 3년이라하여 금년7월 공고인 경우 2002, 2003, 2004년의 협회에 신고된 실적이라고 합니다. 만일 금년 신설된 업체인 경우, 아직 신고하지 못한 금년 공사실적만 있다면 어떠한 증명절차나 서류가 필요한지요? 저희 회사는 2002, 2003, 2004년의 실적이 없습니다. 협회에 신고가 이미 된 경우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61호)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이하“관련협회”라 한다)에서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이하“증명서”라 한다)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련협회 실적신고는 1회계연도(1.1-12.31)단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올해(2005년도)에 설립된 업체라면 실적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종별 시공실적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설계변경 및 신규비목으로 적용 여부 질의****[질 의]**

질의 1) 설계변경 및 신규비목으로 적용 여부

- ① 당 현장에 조립식 간이흡막이(SK판넬) 공법의 품목이 설계되었으나 당공법 연장의 변동(증, 감)과 규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 ② 조립식간이흡막이(SK판넬) 품목의 규격이 [당초(H=3,B=1.5M), (H=4,B=1.5M)]에서 작업공간 협소로 작업이 어려운 관계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폭(B)으로 설치 운영하고저 할 때 [변경 (H=3,B=1.7M),(H=4,B=1.7M)] 이를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도 적정한지 여부 또한 당초 설계에 없는 규격 [(H=2, B= 1.7M), (H=5, B=1.7M), (H=2, B=2.5M), (H=3, B=2.5M), (H=4, B=2.5M), (H=5, B=2.5M)]에 대하여 신규비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 2) 설계변경 가능여부

- ① 당 현장은 시내구간(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작업이 실시되는 바 시내 구간의 특수

성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실시하여 되메우기 토사의 반출·반입을 적용하지 않고 누락시킨바, 이에 야적장을 운영 되메우기 토사운반(반출, 반입)을 실시 할 경우 이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초 설계는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및 잔토처리(운반 포함)가 적용되었음.

###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당초 설계서에 계약단가가 없는 비목의 단가는 신규비목의 단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등을 보아 검토할 사항임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공사의 운반거리,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2. 하자보증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및 대금 지급방법 질의

### [질 의]

○ 최근 시설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회사에서 준공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은 서류에 대해 미비 및 제출거부로 대금 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럴 경우 회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노임 및 채권자들을 위해 준공금을 발주처에서 대금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미제출 서류)

#### 1. 선금급 정산 내역서

기성급 신청시 발주처에 전달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영수증 미첨부등을 이유로 회송시켰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증명서



준공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이나 회사에서 벌써부터 회사사정을 이유로 제출 불가능  
통보

3. 산재,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 납입 증명서

회사에서 회사사정을 이유로 발주처에서 대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발  
주처에서 대납이 가능한 지 여부 및 대납이 가능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지  
급할 수 있는 지 여부

4. 안전관리비 정산내역서

준공계 접수 및 준공검사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럴 경우 감액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5. 환경보존비 사용내역서

준공계 접수 및 준공검사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럴 경우 감액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 질의하신 하자보수보증금은 대금지급시까지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준공  
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  
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산재등 보험은 계약상대자가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을 정산하도록 법령 및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정산하여  
야 할 것입니다.

### 13.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질 의]

질문 1) 지상2층 바닥면적 480m<sup>2</sup>인 슬래브형건물의 지붕에 외관과 방수를 목적으로 A형

철골지붕틀을 설치하고 샌드위치판넬+금속기와의를 씌우는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받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붕의 처마가 외벽면에서 1m정도 돌출되고 처마받자와 후레싱 및 물받이, 선흡통설치작업을 하려면 외부 강관비계설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역서상엔 외부 강관비계매기가 반영되어있지 않고, 이 동식 강관비계 1대만 잡혀 있습니다. 더구나 18m구간은 30cm두께의 기존 콘크리트 난간벽을 인력철거하고 창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강관비계는 물론 낙하물방호 선반까지 설치해야할 실정인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상기의 공사를 10여일 진행 중 태양열설비관련 발주처 측 내부사업검토를 위해 공사중단 요청이 있어 그대로 따랐는데, 조금씩 미루다 보니 90일 공기 중에 30일 정도를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공사중지 처리는 해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은 50일간에 공사를 마쳐보려고 공사재개하고 보니 장마기간이라 15일 정도를 또 허비하게 되어서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공기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질문 1에 대하여) 귀 공사가 1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라면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상에 가설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사시공에 필요한 가설물량이 누락된 경우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동사항의 해당여부는 발주기관이 설계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2에 대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공기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장마기간 등에 의한 공기연장은 계약상대자가 장마로 인해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공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4. 시설공사 적격심사 및 계약관련 질의

### [질 의]

- 2005. 7월 학교급식실 확장공사(긴급) 전자입찰로 집행하면서 낙찰가 44,219,490원의 전문설비 공사로 행자부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를 한다고 공고하고 g2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찰과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공사 적격심사 결과판정조회, 시설최종 낙찰자 등 모든 정보가 g2b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 되므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1순위 업체에 직접 고지하지 않았고 이의신청기간 (7.16개찰. 3일의 이의신청기간~7월18일)이 지난 후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1순위 업체가 7월 22일 퇴근시간 이후 이의를 제기하여왔고, 확인결과 조달청의 전산자료 중 공사경영상태( 회사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전혀 입력되어있지 않아 부적격으로 심사 된것으로 추정되며 1순위 건설업자는 절차상의 하자(적격심사대상자통보를 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지못했다고)라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조달청의 g2b 프로그램으로 적격심사를 한 것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인지 전산 자료입력을 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입찰공고처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선정이다 공개되는데도 본인에게 직접고지 하지 않았다고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인지 ..., 2순위 업체의 경우 낙찰자 선정통보 및 계약의뢰를 공문으로 보내고 당초 7월 22일 계약예정이었는데 착공일자가 서로 맞지 않아(급식실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사를 마쳐야 하는 긴급공사였고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30일임) 협의를 위해 들어왔다가 표준계약서에만 날인을 하고 계약보증금을 끊는다고 표준계약서는 교부를 하였으며 기타의 계약관련 서류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사는 착공계 제출과 착공 자체를 일시 중지시켜놓은(무리한 착공 및 소송제기시 학생들의 급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상태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잘 해결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회 신]

-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자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현재 전자계약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날인한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집행 시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래〉

-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물품매각, 공공기관과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생략 가능함
- 계약일반조건(생략문구로 생략가능), 계약특수조건
-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 1억 이상 공사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과업지시서가 있는 경우 과업지시서
-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 15. 시공상 필요공정 누락시 설계변경 요인

### [질 의]

- 저희 회사에서 2005년 6월9일에 포장공사사업을 계약 하였습니다.시공을 하던 중 내역서를 검토 하였는데 보조기층 재료비는 책정이 되었는데 운반비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시공 상에 필요한 공정이 누락되었을 때 설계변경 요인이 아닌가요?

### [회 신]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동 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재료비는 현장하차도로 설계된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를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16. 입찰무효 여부 질의

### [질 의]

- 개찰 후 1순위 업체의 아래 사유가 발생되어 질의합니다  
시설공사 입찰건입니다

- 공고명 : 00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05.7.22.09:00~05.7.28. 08:00
- 개찰일시 : 05. 7. 28. 11:40
- 1순위 업체 투찰시간 : 07. 27. 14:35
- 1순위 업체 상호 변경됨 : B B종합건설(주) 에서 Z Z종합건설(주)
- 변경일자 : 05.7.27(등기-등기부등본)
- 1순위 업체 상호가 투찰일에 변경되고, 변경 되기 전의 상호로 투찰되었음
- 문의 상기 1순위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44조6의2 가호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 등록 없이 투찰하였기에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마감 마지막 날이고 등기부등본이 변경되어 (통보가 법원에서 늦게 되고) 나라장터에 사실상 등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무효사유가 아닌지 질의합니다.

### [회신]

- 입찰참가자격유무는 현장설명 참가가 임의인 물품·용역·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이며 현장설명이 의무인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설명 참가가 임의이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및 해당업체 입찰일이 7. 27일 이라면 7. 26일 까지는 변경등록되어 있어야 유효한 입찰에 해당됩니다.

## 17.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질의

### [질 의]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공고 제2005-63호 (조달청입찰공고번호 20050705743-00)
- ○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설계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설명서(행정자치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로 결정되는 방법인 경우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결과 2개 이상 업체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점수를 받을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회신]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62호) 제4조의 규정에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뜻은 95점이상 획득한 입찰자 중 최저가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보면 무난할 것입니다.

### 18.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 행정자치부예규 제162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시 타지역업체가 관할 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20%이상시 1점, 15%이상시 0.8점, 10%이상시 0.6점, 10%미만시 0.4점의 점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업체가 관할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10%미만으로 0.4점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지역업체 참여도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0점처리를 하는지?

[회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2호)<별표 1>의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항목 평가

는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미만일 때에는 0.4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없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 19. 민유림 숲 가꾸기 계약 관련 질의

### [질 의]

#### ○ 민유림 숲 가꾸기사업

- 숲 가꾸기사업은 산림청 규정에 의거 100%(보조금 90%와 자부담 10%)를 모두 적용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시 자부담 10%를 산주로 부터 징수가 불가능함으로 설계상 총원가(100%)에서 10%를 제외한 금액(90%)으로 계약 의뢰하여 실행하였습니다.(사업실행면적은 100%)

#### ○ 질의내용

이런 경우 보조금 90%만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접노무비, 4대 보험료 및 시공사 이윤을 90%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설계금액 100%로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ex) 현행- 1,000ha 면적의 숲가꾸기 사업실행시

1. 보조금과 자부담 포함하여 설계 - 500,000,000원
2. 계약부서 계약의회시 자부담(10%) 공제- 450,000,000원
3. 계약시 2번금액에 낙찰가 적용하여 계약시공
4. 실행면적은 1,000ha 준공

**[회 신]**

○ 귀 질의는 계약업무 질의와는 별개이며 규정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보조금 사업이 자부담이 어려운 이유로 편법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 제조, 구매 및 용역의 원가계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20.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 관련 질의****[질 의]**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1. 기계공사 기자재비의 견적(3개사 견적 후 개개항목의 합계가 최저인 업체 선정)은 거래실례가격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2.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3. 위 1번의 기자재비가 거래실례가격인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은 별도 가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비(기타경비,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의 경우 타 재료비와 합쳐져서 계상되는 것인지요?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견적은 거래실례가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거래실례가격이란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바 그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지)

- 나)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지료, 유통물가, 물가정보지 등
-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라)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않됨.  
 -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재료비 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때에는 이것이 원가계산요소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함
- 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질의 2에 대하여) 견적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3에 대하여)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거래실례가격으로 재료비를 산정한 경우 그 재료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되며, 경비는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1.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제161호에 의한 적격심사 관련 질의

### [질 의]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전문공사를 7.11일 공고 후 7.22일 입찰 후 회계예규 제 161호 ‘별지 9’에 의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합니다.

질의 1) 05년도에 신설된 업체의 경영상태평가를 ‘별표 3’의 5항에 의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로 평가할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평가가 가능한지요?

질의 2) 1)항과 관련한 기업진단보고서상에 타인자본 0, 자기자본 2억, 유동자산 149,810천원, 유동부채 0인 경우 별표 3-6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가) 경영상태 항목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0원/2억원'의 등급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요? (04년 업계의 전체평균비율 112.55) A 등급으로 5점을 적용 하면 되는지요?

나) 경영상태 항목 중 최근년도 유동비율 '149,810천원/0원'의 등급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요? (04년 업계의 전체평균비율 132.76) A등급으로 5점을 적용 하면 되는지요?

질의 3) 05년에 신설된 업체는 04년 실적이 없으므로 실적 신인도에 가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 4)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전문공사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업체로 되어 있는경우 업체에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건설협회가 아닌 대한○○협회(공사업 종류: 기계설비공사업)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04.12월 말 정기결산 서 및 '05.4.15일 협회 신고된 자료에 의거 발급받음)를 제출한 경우 대한○○협회의 경영상태 확인서에 의하여 적격심사, 즉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한지요?

##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제161호) < 별표 3 > 경영상태평가방법→Ⅱ.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에서 제5호의 규정에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

태를 평가함.

단,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하며,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가 : 타인자본이 없고, 자기자본이 2억인 경우이므로 해당 경영상태 평가는 A등급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나 : 유동자산은 149,810천원이고, 유동부채는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 경영상태 평가는 A 등급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신인도에 가점할 수 없습니다.

질의 4에 대하여) 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에는 해당업체의 업종별 시공여유율(시공능력평가액), 시공경험 평가자료 (시공실적), 영업기간 평가자료 등이 병기되므로 각각의 해당업종에 해당하는 협회의 경영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